

의안번호	2205339
의 퇴 인	박정 의원
회 답 일	2025. 2. 14.
추계번호	24A49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제2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의6 ¹⁾ 에 따른 구동축전지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제2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²⁾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이하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전기차의 구매자·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1)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3.8.16. 일부개정, 2025.2.17.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안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 등 다른 차량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전기차를 중심으로 검토함

- 개정안에 따라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보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현재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³⁾”을 실시하여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은 성능·안전 등과 관련된 여러 요건을 기준으로 각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일정 금액 및 계수를 곱하여 차등 지급되며⁴⁾, 해당 요건 중 하나로 “배터리안전”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 배터리 안전기능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관리가 용이한 차량에 대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배터리 안전보조금 최대 50만원 지원
 - * (2024.2.19. 도입) 차량정보 수집장치 OBD II (On Board Diagnostics II) 장착 차량 20만원 지원
 - * (2025.1.15. 도입) 급속·완속충전 중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안전정보(충전정보·열화정보 및 전압·전류·온도 등)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해당 정보 제공 시 20만원 지원
 - * (2025.1.15. 도입) 주차 중에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⁵⁾을 제공하는 차량 10만원 지원
 - 개정안이 현재 실시 중인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인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기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전기차 배터리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재정 지원을 도입하려는 목적이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기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재정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3) 무공해차 보급사업(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33-311)의 내역사업

4)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 2025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text{성능보조금}^* + \text{배터리안전보조금}) \times \text{배터리효율계수} \times \text{배터리환경성계수} \times \text{사후관리계수} + \text{보급목표 이행보조금} + \text{충전인프라보조금} + \text{혁신기술보조금}] \times \text{가격계수} \times \text{안전계수}$$

* 성능보조금: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5) 국토교통부 「구동축전지 위험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 단계 시 자동알림 기능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기존 전기차 보조금의 인상 수준이나, 신규로 도입할 안전 요건 및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재정 지원을 받게 될 전기차 구매자의 수, 지원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가정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기존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투입 계획 및 여력에 따라 재정소요가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4년 1년 동안 전기차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⁶⁾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는 19만 6,592대로, 지급 금액(국비⁷⁾)은 총 1조 1,628억원임

[표]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차 보조금(국비)
전기승용차	636,679
전기승합차	135,800
전기화물차	390,307
합계	1,162,786

보조금 지급 대수: 총 196,592대

자료: 환경부

- 이에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의 구매자·소유자에게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6)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총액으로 지급하므로, 배터리안전 전보조금의 현황만 별도로 산출할 수는 없음

7) 지방비의 경우 지급 현황 자료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